

대법원 2021다299594 손해배상(자)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엄상필)은, 2024. 6. 20.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함[‘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채택]
- 이와 달리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중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1. 사안의 개요

-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장애연금 전액을 대위 행사하면서, 원고가 가해자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계참가한 사안임

2. 소송의 경과 ➡ 국민연금공단은 원심에서 승계참가함

▣ 제1심: 원고 일부 승

▣ 원심: 원고 일부 승 +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일부 승

- 원심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590만 원(= 약 2,650만 원 × 60%)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전액인 약 2,65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3. 상고심의 주요 쟁점 : 전원합의 쟁점

▣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가해자 측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2007다10245 판결 등의 변경 여부

4. 대법원의 판단 ➡ 전원일치 의견

가. 법리의 선언

- ▣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 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그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함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¹⁾의 문언만으로 그 대위 범위를 반드시 공

1)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

단이 부담한 '연금급여액 전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연금법의 입법 목적, 국민연금 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은 위 대위 범위의 판단에도 고려되어야 함

-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인정한 취지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연금급여 전액'을 대위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재정 확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해석이 정당화될 수도 없음
-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적어도 '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는 연금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임
-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산방식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였는데, 위 각 보험과 국민연금은 모두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법질서 내에서의 통일된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판례의 변경

- ▣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함**

다. 이 사건의 결론 ⇨ 상고기각

- ▣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장애연금액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약 2,65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약 1,590만 원(=약 2,650만 원×60%)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약 1,060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원고를 위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함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5.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최근 건강보험, 산재보험 사안²⁾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하였고, 국민연금 사안에서도 종전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취하던 견해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함으로써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로써 주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의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험 성격을 조화롭게 고려하며, **공단과 피해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가 있음

2) ① 국민건강보험 사안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안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